

		시 민	
문서번호	여성정책담당관-17129	주무관	실무사무관
결재일자	2018. 10. 1.	여성정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실장
공개여부	부분공개(5 6)	협 조	
방침번호			



서울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【2018년 제4차 (서면심의)】

2018. 10.

여성가족정책실
(여성정책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료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약 배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 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와이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 플랜, 앵커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8년 제4차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

2018년 제4차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서면)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

□ 회의개요

- 심의기간 : '18.9.17.(월) ~ 9.20. (목)
- 심의방법 : 서면(심의위원에게 자료 송부 후 심의결정서 수합)
- 심의안건 :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및 추가조치(2건)
 -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(18신청-63)
 -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(18신청-66)
- 심의위원 : 총 15명 (위원장 2, 위원 13)
 - 당연직(5명) : 행정1부시장(위원장), 행정국장, 감사위원장, 여성가족 정책실장, 인권담당관
 - 노조추천(3명) : 김윤정(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), 김병일, 최명자(서울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)
 - 외부위원(7명) : 황현숙(위원장,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)
이미경(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)
장윤경(갈등경영연구소 소장)
허난영(여성긴급전화 1366 소장)
최미진(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)
김영선(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교수)
최중진(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)

※간사 : 여성정책담당관

□ 위원별 주요 의견

구 분	주 요 내 용
* * *	피해자에게 충분한 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필요
* * *	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 확행
* * *	피신청인의 이의신청 결과 반영 필요
* *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건 결정일 한 달 이내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◦ 18신청-66 관련, 피진정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 형식의 진심어린 사과 필요 ◦ 서면심의 보다는 집합심의 개최 바람직
* *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문 ‘피신청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’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(예 : 재발방지 교육 20시간 이수, 3개월 이내 등), 교육 후 보고체계 철저 관리
* *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8신청-63과 관련,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업무공간분리 주문에 대해 서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소 미흡해보임. ◦ 18신청-66과 관련, 피해자에게 충분한 휴가와 심리치료 제공 필요
* *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18신청-63) 해당 기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되, 성희롱 사건임에도 인사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유 필요 ◦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

□ 향후계획

○ 해당 부서에 논의 및 제안 사항 전달

- (18신청-63) 관련부서 : 피해자와 가해자 간 업무공간 분리 유지 및 향후 모니터링 필요, 징계 결정사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통보 (징계 조치 없을 시 사유 제시)
- (18신청-66) 관련부서 :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사과문 전달
- 조사담당관 : 18신청-66 관련, 징계 결정사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통보 (징계 조치 없을 시 사유 제시)

○ 향후 고충심의위원회 보고

- 사건 별, 인사조치 결과
- 한 달 내 위원회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, 고충심의위원회 '환류기능' 강화로 주문 이행 기간(약 한달)을 두고 개최됨을 설명
- 피신청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달하고 교육 후 보고체계 철저히 하자는 의견은 기 시행 중임을 보고
 - ※ 피신청인에게 교육 기관을 안내하고 3개월 이내 교육 이수독려, 가해자는 교육기관과 초기상담 후 교육횟수(기간) 결정, 교육 완료 후 이수증 제출

붙임 : 위원별 서면심의서 각 1부. 끝.